

의안번호	2212144
의 퇴 인	송옥주 의원
회 답 일	2026. 1. 12.
추 계 번호	25B438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u>마을어업수산물</u> ,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의무규정
2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1. “농어업재해”란 농작물·임산물·가축 및 농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병충해·조수해(鳥獸害)·질병 또는 화재(이하 “농업재해”라 한다)와 양식수산물, <u>마을어업수산물</u>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질병 또는 화재(이하 “어업재해”라 한다)를 말함. ※ 어업재해 대상에 마을어업수산물 추가	의무규정
3	안 제4조(재해보험의 종류 등)	재해보험의 종류는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및 <u>마을어업수산물재해보험</u> 으로 함. 이 중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및 <u>마을어업수산물재해보험</u> 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장함 ※ 재해보험의 종류에 마을어업수산물재해보험 추가	의무규정
4	안 제5조제1항 제3호의2 신설 (보험목적물)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함 <u>3의2. 마을어업수산물재해보험: 마을어업수산물 및 마을어업 시설물</u>	의무규정
5	안 제7조(보험가입자)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 또는 마을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하여야 하며</u> , 구체적인 보험가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1. 개인 2. 법인 3.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 또는 <u>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u> ※ 보험가입자에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추가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조(목적)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2조(정의)		
3	안 제4조(재해보험의 종류 등)		
4	안 제5조제1항제3호의2 신설(보험목적물)		
5	안 제7조(보험가입자)		

2. 상세 사유

1. 농어업재해보험 운영 현황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현행법에 따라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 제도 운영중

- **(농업재해보험)** 농가 경영안정 및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여 농업인의 재해보험 가입 지원
 - －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운영 중이며, 보험가입자(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지원(가축질병치료보험 '24년 종료)
- **(양식어업재해보험)**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어가의 경영불안 해소와 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어업 생산활동에 기여
 - － 양식수산물 및 그 시설물에 대한 보험료의 일부 지원

- [참고자료 1] 농어업재해보험 개요
- [참고자료 2] 농작물재해보험 사업 개요
- [참고자료 3] 가축재해보험 사업 개요
- [참고자료 4] 농업수입안정보험 사업 개요
- [참고자료 5] 양식어업재해보험 개요
- [참고자료 6]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 보험금 지급 현황

[표 1] 농어업재해보험 제도 현황: 2025년 기준

구분	종류	보험목적물	보험료 지원율 (국비)
농업재해보험 (총 107품목)	농작물재해보험 (76품목)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감자, 콩, 양 파, 벼(일반벼/조사료용벼), 배추, 양상추 등	순보험료의 33~65%
	가축재해보험 (16품목)	소, 돼지, 가금(닭·오리·꿩·매추리·칠면조·거 위·타조·관상조), 말, 기타(사슴·양·벌·토끼· 오소리)	영업보험료의 50%
	농업수입안정보험 (15품목)	콩, 포도, 양파, 마늘, 고구마, 가을감자, 양 배추, 보리, 옥수수, 벼 단감, 복숭아, 감귤(만 감류), 가을배추, 가을무, 고랭지·봄감자	순보험료의 50% 운영비 100%
양식어업재해보험 (총 30품목)	본사업 (17품목)	넙치, 전복, 다시마, 굴, 홍합 등	순보험료의 50%
	시범사업 (13품목)	김, 멍게, 뱀장어, 미역 등	운영비 1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각 재해보험의 보험사업자¹⁾는 농협손해보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으
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가입자 보험료와 보험사업자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 중임

1) 「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보험사업자) ①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2011.3.31.>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
2의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② 제1항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
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표 2] 농어업재해보험 운영 보험사업자 현황

소관	재해보험	보험사업자
농림축산식품부	농작물재해보험	농협손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농협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농업수입안정보험	농협손해보험
	가축질병치료보험	농협손해보험
해양수산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나. 마을어업수산물재해보험 근거 신설

- 개정안은 농어업재해보험의 종류에 마을어업²⁾수산물 및 마을어업시설물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마을어업수산물재해보험을 추가하고, 보험가입자의 범위에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을 추가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정부가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³⁾하고 있어 개정안 시행으로 마을어업수산물재해보험 가입자 보험료 및 사업자 운영비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2) 「수산업법」

제7조(면허어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2. 마을어업: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連接)한 일정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

제8조(마을어업 등의 면허) ①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漁村契)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에만 면허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일정한 지역의 어업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에 마을어업 외의 어업을 면허할 수 있다.

3) 제19조(재정지원)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다만, 현 시점에서는 마을어업수산물재해보험의 가입자 수, 보험료, 운영비, 지원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없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김성원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성원	02-6788-4650	holystone@assembly.go.kr

[참고자료 1] 농어업재해보험 개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1. 개요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현행법에 따라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 제도 운영중
 - (농업재해보험) 농가 경영안정 및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여 농업인의 재해보험 가입 지원
 -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운영중이며, 보험가입자(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지원(가축질병치료보험 '24년 종료)
 - (양식어업재해보험)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어가의 경영불안 해소와 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어업 생산활동에 기여
 - 양식수산물 및 그 시설물에 대한 보험료의 일부 지원

<농어업재해보험 제도: 2025년 기준>

구분	종류	보험목적물	보험료 지원율 (국비)
농업재해보험 (총 107품목)	농작물재해보험 (76품목)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감자, 콩, 양과, 벼(일반벼/조사료용벼), 배추, 양상추 등	순보험료의 33~65%
	가축재해보험 (16품목)	소, 돼지, 가금(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관상조), 말, 기타(사슴·양·벌·토끼·오소리)	영업보험료의 50%
	농업수입안정보험 (15품목)	콩, 포도, 양과, 마늘, 고구마, 가을감자, 양배추, 보리, 옥수수, 벼 단감, 복숭아, 감귤(만감류), 가을배추, 가을무, 고랭지·봄감자	순보험료의 50% 운영비 100%
양식어업재해보험 (총 30품목)	본사업 (17품목)	넙치, 전복, 다시마, 굴, 홍합 등	순보험료의 50%
	시범사업 (13품목)	김, 명게, 뱀장어, 미역 등	운영비 1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축종 도입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⁴⁾

□ 농작물재해보험

연도	대상 품목(품종/작형)	누계
2001	사과, 배	2
2002	포도, 복숭아, 단감, 감귤	6
2006	뽕은감	7
2007	밤, 참다래, 자두	10
2008	콩, 양파, 고추, 시설투(수박)	14
2009	감자(봄감자/고랭지감자/가을감자),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벼	20
2010	시설투(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대추	25
2011	시설투(꽃고추, 애호박, 국화, 장미), 복분자	30
2012	인삼, 시설투(멜론, 파프리카), 오디, 차	35
2013	시설투(부추, 시금치, 상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40
2014	시설투(배추, 가지, 파)	43
2015	시설투(무, 백합, 카네이션)	46
2016	밀, 시설투(미나리), 양배추, 오미자	50
2017	시설투(쑥갓), 무화과, 유자	53
2018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 메밀, 브로콜리	57
2019	배추(고랭지/월동), 무(고랭지/월동), 당근(고랭지/가을·월동), 단호박, 파(대파/쭈파·싹파), 벼(조사료용), 옥수수(조사료용)	62
2020	호두, 팔, 시금치, 보리, 살구	67
2022	배추(가을배추)	67
2023	귀리, 시설투 봄감자, 양상추	70
2024	두릅, 블루베리, 수박	73
2025	생강, 참깨, 녹두	76
합계	76개 품목	

4)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23~'27)」, 2023.1. 등)

□ 가축재해보험

연도별	대상 축종	누계
1997	소	1
2000	돼지, 말	3
2002	닭	4
2004	오리	5
2005	꿩, 메추리	7
2006	칠면조, 사슴	9
2007	타조, 거위	11
2008	양	12
2009	꿀벌	13
2010	토끼	14
2011	관상조	15
2012	오소리	16
합계	16개 축종	

□ 농업수입안정보험

연도별	대상 품목	누계
2015	콩, 포도, 양파	3
2016	마늘	4
2017	고구마, 가을감자	6
2018	양배추	7
2024	보리, 옥수수	9
2025	감자(봄,고랭지), 벼, 가을배추, 가을무, 단감, 복숭아, 감귤(만감류)	15
합계	15개 품목	

3.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대상지역 현황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보험 대상품목(총 30개)

- **본사업 품목(17):**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송어, 능성어,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톳, 가리비 및 그 시설물
- **시범사업 품목(13):** 멍게, 미역, 김, 뱀장어, 송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 전복종자, 방어, 흰다리새우 및 그 시설물

□ 보험사업 실시지역

- **본사업 품목(17):** 전국
- **시범사업 품목(13):** 보험의 효용성·실시 가능성 등 검증을 위해 일정 기간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

<시범사업 품목별 사업지역 현황>

품목명	사업지역
김	전남 해남군, 신안군, 고흥군, 완도군, 장흥군, 목포시, 무안군, 진도군, 함평군 충남 서천군, 태안군, 보령시/ 경기 안산시, 화성시/ 전북 군산시, 부안군/ 부산 강서구 인천 옹진군, 강화군(단, 팽생이 모자반 및 유빙 특약은 특정지역만 가입 가능)
멍게	경남 통영시, 남해군, 고성군, 거제시/ 강원 고성군, 삼척시, 강릉시, 양양군, 속초시
미역	경북 경주시,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제주도/ 전남 여수시
뱀장어	전남 영광군, 함평군, 강진군, 무안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영암군, 나주시, 순천시, 담양군, 곡성군, 화순군, 해남군, 장성군/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완주군, 익산시/ 충북 충주시
송어	강원 영월군, 정선군, 춘천시, 평창군, 삼척시, 철원군, 횡성군, 태백시, 홍천군, 화천군 경북 구미시, 상주시/ 충북 보은군, 충주시, 청주시, 제천시, 괴산군/ 경기 가평군
미더덕	경남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오만둥이	경남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터봇	제주도
메기	충남 홍성군, 논산시, 당진시, 부여군, 아산시, 예산군, 청양군/ 전북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완주군, 부안군, 고창군, 장수군, 임실군
향어	전북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완주군, 부안군, 고창군/ 전남 함평군
전복종자	전남 진도군, 해남군, 완도군
방어	경북 경주시,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흰다리새우	충남 당진시, 아산시, 태안군, 서산시, 홍성군, 보령시, 서천군

[참고자료 2] 농작물재해보험 사업 개요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사업목적)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 지원('01~)

□ (대상품목) 76개 품목 및 농작물 재배시설

* ('01년) 2개(사과·배) → ('18) 57 → ('19) 62 → ('20~'22) 67 → ('23) 70 → ('24) 73 → ('25) 76

□ (사업내용) 순보험료의 50%, 운영비 100% 지원

□ (사업예산) '26년 6,008억원(미지급금 포함)

(단위: 억원)

구분	'21	'22	'23	'24	'25	'26
합계	4,356	6,719	7,065	6,344	5,770	6,008
보험료지원	3,519	5,621	6,077	5,356	4,842	5,017
운영비지원	837	1,098	988	988	928	991

□ (가입실적) '12년 이후 가입 증가*, '24년 가입률 54.2%

* ('12) 13.6% → ('19) 38.8 → ('20) 45.0 → ('21) 49.4 → ('22) 49.9 → ('23) 52.0 → ('24) 54.2

□ (지급실적) '01~'24년까지 총 7조 2,434억원 보험금 지급, 재해위험 대비 농가의 경영안정 장치로서 역할

○ (보험금) '24년 24.3만 농가 대상 보험금 1조 208억원 지급

* ('19) 8,980억원 → ('20) 10,158 → ('21) 5,740 → ('22) 5,558 → ('23) 10,042 → ('24) 10,208

○ (손해율) 연도별 재해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01년 이후 '24년까지 누적 손해율은 99.1% 기록

* ('19) 186.2% → ('20) 150.6 → ('21) 74.2 → ('22) 65.0 → ('23) 107.3 → ('24) 97.9

[참고자료 3] 가축재해보험 사업 개요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사업목적)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 지원('97~)

* 근거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 (대상축종) 가축(16축종) 및 축산시설물

* 소, 돼지, 가금(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관상조), 말, 기타(사슴·양·벌·토끼·오소리)

- (사업내용) 영업보험료(순보험료+운영비)의 50%(가입자별 최대 5천만원)

- (사업예산) '26년 1,102억원

(단위: 억원)

구분	'20	'21	'22	'23	'24	'25	'26
예산	1,122	1,191	1,191	1,191	1,122	1,099	1,102

- (보장내용) 자연재해, 질병(법정전염병 제외), 화재 등으로 인한 폐사 손실 보장

* 자기부담비율(소·말 20%, 가금·돼지 5%)을 제외하고 100% 보상

- (가입실적) '24년 기준 가입률 95.4%(가입두수 298,222천두) 수준

* ('01) 21.7% → ('20) 92.8 → ('21) 93.7 → ('22) 94.7 → ('23) 94.4 → ('24) 95.4

- (지급실적) '97~'24년까지 총 2조 1,278억원 보험금 지급, 재해피해 손실을 보전하여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

- (보험금) '24년 16개 축종, 11천 농가, 보험금 2,013억원 지급

* ('19) 1,743 → ('20) 1,477 → ('21) 1,462 → ('22) 1,679 → ('23) 1,648 → ('24) 2,013

- (손해율) '18년 이후 손해율은 점차 안정화 추세

* ('18) 156.1 → ('19) 99.6 → ('20) 80.8 → ('21) 78.9 → ('22) 93.0
→ ('23) 94.2 → ('24) 111.1

[참고자료 4] 농업수입안정보험 사업 개요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사업목적) 자연재해 또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 감소 위험을 관리하여 농가 경영안정 및 안정적 재생산 활동 지원('15~)
- (대상품목) '25년 15개 품목
 - * ('15) 3개(콩·포도·양파) → ('16) 4(+마늘) → ('17) 6(+고구마·가을감자) → ('18~) 7(+양배추) → ('24) 9(+옥수수·보리) → ('25) 15(벼, 단감, 복숭아, 감귤(만감류), 가을배추, 가을무, 고랭지·봄감자)
- (지원내용) 순보험료의 50% 내외, 운영비 100% 지원
- (보장피해) 자연재해, 조수해(야생동물피해), 화재, 시장가격하락 등
- (사업예산) '26년 2,752억원

(단위: 백만원)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예산 (마지급)	3,159	4,649	4,649	5,149	5,100 (7년 182)	5,257 (8년 108)	2,500	2,500	2,500	8,100	207,817	275,181
국고지원	4,133	3,950	17,881	5,257	5,100	4,432	2,500	2,500	2,500	8,100	207,817	275,181

- (가입실적) '15~'24년 동안 총 18,544ha, 21,135 농가 가입
 - 품목별 주산지 등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어 가입률* 저조
 - * 연도별 가입률: ('15) 12.4% → ('17) 20.3 → ('19) 3.7 → ('21) 3.0 → ('22) 3.2 → ('23) 3.3 → ('24) 3.9
 - '24년 기준 총 9개 품목 2,649ha, 3,297 농가 가입
- (지급실적) '15~'24년 동안 총 14,383 농가에 보험금 954억원을 지급하였으며, 누적 손해율은 131.7%
 - * 연도별 손해율: ('15) 7.7% → ('17) 31.5 → ('19) 185.6 → ('21) 67.8 → ('22) 110.0 → ('23) 150.9 → ('24) 76.6
 - * 연도별 보험금: ('15) 4억원 → ('17) 77 → ('19) 109 → ('21) 25 → ('22) 40 → ('23) 59 → ('24) 63
 - '24년 기준 총 9개 품목 1,872 농가에 보험금 63억원 지급

[참고자료 5] 양식어업재해보험 개요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현황) 재해피해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도입('08), 거대재해의 경우 국가재보험을 통해 국가에서 위험 분담

- 근거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 보험사업자: 수협중앙회
- 대상품목(30개)
 - 본사업: 넙치, 전복, 해삼가두리어류 등 17개 품목
 - 시범사업: 김, 미역, 멥게 등 13개 품목
- 보상재해
 - (주계약)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적조, 한파, 이상조류, 저수온 등
 - (특약) 전기장치위험, 이상조류·고수온·저수온·수질, 조수, 양식시설물
- 보장수준
 - 수산물: 산지가격의 85~90% 수준으로 보상(보험가입금액 이내)
 - 시설물: 원상복구비 전액(보험가입금액 이내)

- (지원) 보험가입 유도 및 어업인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일부(국비 50%, 지방비 20~30%) 및 운영비 전부(100%)를 지원

* 예산: ('20) 268억원 → ('21) 283억원 → ('22) 253억원 → ('23) 230억원 → ('24) 241억원 → ('25) 250억원 → ('26) 248억원

- (가입) 정부가 지원하되, 사유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물적(物的)보험이고, 가입여부는 양식어가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임의보험

* 사람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하는 人的보험은 가입의무 부여(ex 산재보험, 어선원보험)

** 가입자 수(가입률): ('20) 3,744어가(39.1%) → ('21) 2,682(28.0) → ('22) 2,733(37.0) → ('23) 2,936(39.8) → ('24) 2,926(39.7) → ('25) 3,095(41.5)

- 추진절차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를 통해 상품개발, 가입 및 보험금지급 등 일련의 절차 수행, 사업관리기관(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관리·감독 및 우리부에서 국고 보조

[참고자료 6]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 보험금 지급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농업재해보험

○ 농작물재해보험

(단위: ha, 호, 백만원)

연도	가입 면적 (ha)	가입 농가수 (호)	보험 가입률 (%)	순보험료 (A)	국고지원		지방비 지원			자부담		ha당 순보험 료 (만원)	ha당 농가부담 보험료 (만원)	보험금 지급실적	
					국고지원금 (B)	국고지원율 (B/A)	시도 지원금 (C)	시군구 지원금 (D)	지방비 지원율 (C+D)/A	농가 부담금 (E)	농가 부담률 (E/A)			건수 (건)	지급액 (백만원)
2024	676,226	589,676	54.2	1,141,145	544,222	47.7%	145,285	307,424	39.7%	144,213	12.6%	168.8	21.3	263,766	1,020,784
2023	636,727	547,183	52.0	1,039,681	506,116	48.7%	130,793	273,302	38.9%	129,469	12.5%	163.3	20.3	215,368	1,004,249
2022	609,793	512,995	49.9	949,656	466,677	49.1%	116,121	247,167	38.3%	119,692	12.6%	155.7	19.6	162,232	555,777
2021	594,250	497,884	49.4	848,524	417,546	49.2%	100,073	213,311	36.9%	117,595	13.9%	142.8	19.8	172,822	573,989
2020	550,174	440,173	45.0	722,223	355,306	49.2%	84,360	180,563	36.7%	101,994	14.1%	131.3	18.5	225,240	1,015,827
2019	456,024	339,582	38.8	511,146	252,154	49.3%	62,068	123,237	36.3%	73,688	14.4%	112.1	16.2	190,492	898,048
2018	376,593	275,133	32.9	550,149	271,334	49.3%	57,973	126,858	33.6%	93,984	17.1%	146.1	25.0	85,099	534,450

○ 가축재해보험

(단위: 천두, 호, 백만원)

연도	가입 두수 (천두)	가입 농가수 (호)	보험 가입률 (%)	영업 보험료 (A)	국고지원		지방비 지원			자부담		천두당 영업 보험료 (만원)	천두당 농가부담 보험료 (만원)	보험금 지급 실적	
					국고지원금 (B)	국고지원율 (B/A)	시도 지원금 (C)	시군구 지원금 (D)	지방비 지원율 (C+D)/A	농가 부담금 (E)	농가 부담률 (E/A)			건수 (건)	지급액 (백만원)
2024	298,222	38,631	95.4	221,593	107,414	48.5%	7,954	20,208	12.7%	86,017	38.8%	74.3	28.8	44,881	201,344
2023	290,820	36,333	94.4	214,047	103,491	48.3%	8,071	18,787	12.5%	83,697	39.1%	73.6	28.8	41,967	164,786
2022	288,293	34,023	94.7	219,002	105,474	48.2%	7,929	18,948	12.3%	86,651	39.6%	76.0	30.1	39,181	167,904
2021	285,075	22,791	93.7	230,330	110,741	48.1%	7,859	17,770	11.1%	93,960	40.8%	80.8	33.0	34,600	146,247
2020	276,486	21,760	92.8	225,706	107,528	47.6%	7,373	16,697	10.7%	94,108	41.7%	81.6	34.0	34,739	147,730
2019	284,785	21,448	93.3	214,860	105,619	49.2%	6,915	15,187	10.3%	87,139	40.6%	75.4	30.6	35,996	174,302
2018	278,139	19,706	93.0	187,405	92,003	49.1%	5,400	12,470	9.5%	77,531	41.4%	67.4	27.9	32,356	239,275

○ 수입안정보험(구 농업수입보장보험)

(단위: ha, 호, 백만원)

연도	가입 면적 (ha)	가입 농가수 (호)	보험 가입률 (%)	순보험료 (A)	국고지원		지방비 지원			자부담		ha당 순보험 료 (만원)	ha당 농가부담 보험료 (만원)	보험금 지급 실적	
					국고지원금 (B)	국고지원율 (B/A)	시도 지원금 (C)	시군구 지원금 (D)	지방비 지원율 (C+D)/A	농가 부담금 (E)	농가 부담률 (E/A)			건수 (건)	지급액 (백만원)
2024	2,649	3,297	3.9	9,001	4,500	50.0%	1,005	2,542	39.4%	953	10.6%	339.8	36.0	2,061	6,329
2023	1,233	1,652	3.3	4,299	2,149	50.0%	488	1,185	38.9%	476	11.1%	348.7	38.6	1,507	5,858
2022	1,141	1,566	3.2	4,021	2,011	50.0%	473	1,093	38.9%	445	11.1%	352.4	39.0	1,313	4,020
2021	1,007	1,457	3.0	3,946	1,973	50.0%	442	1,029	37.3%	502	12.7%	392.1	49.8	1,024	2,460
2020	1,561	2,006	4.2	6,638	3,319	50.0%	846	1,624	37.2%	849	12.8%	425.2	54.4	1,153	3,451
2019	1,207	1,643	3.7	6,579	3,290	50.0%	776	1,686	37.4%	828	12.6%	545.2	68.6	1,662	10,912
2018	2,121	1,979	7.3	7,291	3,646	50.0%	821	1,592	33.1%	1,233	16.9%	343.8	58.1	5,595	49,763

주: 수입안정보험은 25년 4월부터 판매 개시

○ 가축질병치료보험

(단위: 천두, 건, 백만원)

연도	가입두 수 (천두)	가입 건수 (건)	보험 가입률 (%)	영업보험료 (A)	국고지원		지방비 지원 ¹⁾			자부담		천두당 영업보험료(원)	천두당 농가부담보 험료(원)	보험금 지급 실적	
					국고 지원금 (B)	국고 지원율 (B/A)	시도 지원금 (C)	시군구 지원금 (D)	지방비 지원율 (C+D)/A	농가 부담 (E)	농가 부담률 (E/A)			건수 (건)	지급액 (백만원)
2024	38	726	7.2	3,191	1,596	50%				1,596	50%	83,452,243	41,726,122	27,935	2,453
2023	39	748	7.3	3,182	1,591	50%				1,591	50%	81,747,021	40,873,510	33,503	2,862
2022	44	890	8.3	3,555	1,778	50%				1,778	50%	80,549,214	40,274,607	32,129	2,826
2021	41	865	9.1	3,096	1,548	50%				1,548	50%	76,300,873	38,150,428	27,873	2,502
2020	32	692	7.1	2,501	1,250	50%				1,250	50%	79,154,851	39,577,238	19,700	1,715
2019	31	716	13.3	2,265	1,132	50%				1,133	50%	72,932,425	36,478,559	7,783	717
2018	7	176	6.8	537	268	50%				268	50%	71,677,675	35,838,838	63	7

주: 1) '25년 이전 가축질병치료보험은 시범사업지역 지자체와 가입영업점(농축협)에서 지방비를 직접 정산하여, 보험사업자가 지방비 지원금액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25년 이전 자부담액은 지방비가 포함된 금액임)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단위: 호, 백만원, 신계약 기준)

연도	가입 어가수 (호)	보험가입 률 (%)	순보험료 (A)	국고지원(순보험료)		지방비 지원 ¹⁾			자부담 ²⁾		어가당 순보험료 (천원)	부가 보험료 (국고지원)	보험금 지급 실적	
				국고 지원금 (B)	국고 지원율 (B/A)	시도 지원금 (C)	시군구 지원금 (D)	지방비 지원율 (C+D)/A	어가부담 (E)	어가 부담률 (E/A)			건수 (건)	지급액 (백만원)
2024	2,926	39.7	30,013	15,049	50	3,760	5,917	32	5,287	18	1,807	7,301	289	31,368
2023	2,936	39.8	29,339	14,728	50	3,463	5,847	32	5,301	18	1,806	6,225	238	10,558
2022	2,733	37.0	24,349	12,424	51	2,803	4,903	32	4,219	17	1,544	4,638	377	9,564
2021	2,194	29.7	20,079	10,013	50	—	—	—	10,066	50	4,588	3,749	238	10,762
2020	2,682	28.0	24,557	12,278	50	—	—	—	12,279	50	4,578	3,642	806	33,195
2019	3,744	39.1	32,820	16,410	50	—	—	—	16,410	50	4,383	6,380	2,617	123,774
2018	4,250	44.3	41,981	20,990	50	—	—	—	20,991	50	4,939	10,359	1,275	75,775

주: 보험료는 환급금이 차감된 금액이며, 보험금은 지급준비금은 제외된 금액임

1) '22년 이전 지방비지원의 경우 지자체와 회원조합이 수기 정산하여 실지원금 파악이 어려우며, '22년 이후 국고지원과 함께 즉시 지원하는 전산화 시스템 구축 완료
를 통해 실지원금 확인 가능

2) '22년 이전 자부담액은 지방비가 포함된 금액임